

#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議案 番號	
----------	--

提案年月日： 1997. 10.

提 案 者：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長

##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1997年 7月 28日 金重緯議員의 156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과 1997年 8月 25日 朴相千·李廷武議員의 121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第184會國會(臨時會) 第3次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1997. 8. 28)에서 第2小委員會에 回附하였음.

나. 第2小委員會는 이상 2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1997年 8月 29日부터 1997年 9月 12日까지 10次에 걸친 審査活動을 하고, 그 결과를 第5次委員會(1997. 9.18)에 보고하였으며, 委員會는 小委員會의 未合意事項에 대한 政策的 결정을 위하여 이를 特別委員會委員長과 與·野 3黨總務의 會談에 붙임.

다. 1997年 9月 24日부터 10月 31日까지 23次에 걸친 會談에서 以上 2件의 法案을 統合·절충하여 마련한 與·野 合意單一案을 第6次 委員會(1997. 10. 31)에서 우리 委員會案으로 받아들여 委員會代案으로 提案하기로 하고, 2件의 原案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

## 2. 代案의 提案理由

與野間 政治資金의 衡平性問題와 陰性的인 政治資金의 調達問題를 해소하기 위하여 指定寄託金制의 폐지와 陰性的인 政治資金授受에 대한 處罰規定을 두는 대신 後援會의 年間寄附限度를 上向調整하고 後援會에 의한 政治資金의 調達을 용이하도록 하여 政治資金調達の 透明性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政策政黨의 발전을 위하여 國庫補助金중 20퍼센트이상을 政策開發費로 사용하도록 義務化하는 등 關聯規定을 整備함으로써 政治先進化와 건전한 政黨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 3. 代案의 主要骨子

가. 地區黨 등의 後援會에 年間 寄附할 수 있는 限度額을 個人的 경우에는 1千萬원에서 2千萬원으로, 法人의 경우에는 3千萬원에서 5千萬원으로 上向調整함(案 第6條의2第1項).

나. 中央黨後援會가 年間 寄附할 수 있는 限度를 100億원에서 200億원으로, 市·道支部後援會가 年間 寄附할 수 있는 限度를 10億원에서 20億원으로, 地區黨 등의 後援會가 年間 寄附할 수 있는 限度를 1億원에서 2億원으로 上向調整함(案 第6條의3第1項).

다. 後援會의 金品募集方法으로 集會, 郵便 및 廣告에 의한 募金方法외에 通信에 의한 募金方法과 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方法을 新設함(案 第6條의4第1項).

라. 公職選舉의 選舉期間중에는 集會에 의한 募金과 廣告에 의한 募金を 각 1回씩 할 수 있도록 하고, 郵便·通信 및 定額領收證

- 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은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案 第6條의4第2項).
- 마. 後援會가 모집한 金品을 政黨 등에 寄附한 경우에도 後援會의 預金計座에 寄附金品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案 第6條의4第4項).
- 바. 後援會의 金品募集을 위한 集會에서 祝歌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함(案 第6條의5第2項).
- 사. 바자회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物品價額의 上限額을 폐지함(案 第6條의5第4項).
- 아. 選舉運動期間중에 金品募集을 하는 경우에도 募金을 호소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함(案 第6條의5第3項 및 第6條의6第3項).
- 자. 사용하지 아니한 定額領收證의 반납기관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 管轄選舉管理委員會로 변경함(案 第7條第6項).
- 차. 指定寄託金制를 廢止함(案 第15條第2項 削除).
- 카. 國庫補助金중 100分の 20이상을 政黨의 政策開發費로 사용하도록 義務化함(案 第19條第2項 新設).
- 타. 政黨의 登錄이 取消되거나 解散된 경우 등의 會計報告期間을 20日이내에서 14日 이내로 단축함(案 第24條第1項).
- 파. 大統領選舉에 있어서 決算報告期間을 選舉日후 30日이내에서 40日 이내로 연장함(案 第24條第2項).
- 하. 後援會를 둘 수 없는 者가 政治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後援會나 이와 유사한 機構를 設置하는 경우에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함(案 第30條第7號).

거. 親族이 아닌 者가 이 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경우에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案 第30條第8號).

##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政治資金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號중 “附帶收入등 政治活動을 위하여 所要되는”을 “附帶收入 기타 政治活動을 위하여 제공되는”으로 한다.

第5條第5項중 “서울特別市·直轄市”를 “特別市·廣域市”로 한다.

第6條第1項 但書중 “第6條의4第2項 但書”를 “第6條의4第2項 本文”으로 한다.

第6條의2第1項중 “1,000萬원(法人의 경우 3,000萬원)”을 “2,000萬원(法人의 경우 5,0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1,000萬원을 합한 1億 1,000萬원”을 “2,000萬원을 합한 1億2,000萬원”으로, “3,000萬원을 합한 2億3,000萬원”을 “5,000萬원을 합한 2億5,000萬원”으로 한다.

第6條의3第1項 本文중 “100億원”을 각각 “200億원”으로, “10億원”을 각각 “20億원”으로, “1億원”을 각각 “2億원”으로 하고, 同項 但書を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 第6條의8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後援會는 그 2倍의 金額을 寄附할 수 있다.

第6條의3第2項 但書중 “集會·郵便”을 “集會, 郵便·通信”으로 한다.

第6條의4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後援會는 集會에 의한 募金,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 廣告에 의

한 募金과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발행한 政治資金定額領收證(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의 방법으로 金品을 모집한다.

第6條의4第2項중 “後援會는 第1項의 각 募金方法으로 金品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公職選舉의 選舉期間중에는 1회에 한하여”를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職選舉의 選舉期間중에는”으로, “集會 또는 廣告에 의한 募金方法으로만”을 “集會와 廣告에 의한 募金方法으로 각 1회씩”으로 하고, 同項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과 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條의4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後援會가 金品을 모집한 때에는 金品募集에 직접 소요된 經費를 공제하고 지체없이 모집한 金品을 政黨 등에 寄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 등은 後援會 預金計座에 寄附金品을 보관할 수 있다.

第6條의5 題目중 “郵便”을 “郵便·通信”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가자에게 염가의 飲料(酒類를 제외한다)와 茶菓·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金品을 제공할 수 없다”를 “演藝活動을 할 수 없다.”로 하며, 同項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祝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條의5第3項 本文중 “郵便”을 “郵便·通信”으로, “集會日時·場所 및 納入處·納入方法을”을 “集會日時·場所, 納入處·納入方法과 募金を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同項 但書を 削除한다.

第6條의5第4項 後段중 “할 수 없으며, 바자회·書畫展등에서 販賣할 수 있는 金品등의 價額은 100萬원이하로 한다.”를 “할 수 없다.”로 한다.

第6條의6第3項 但書를 削除한다.

第6條의7第2項第1號중 “大統領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를 “당해 政黨의 黨憲 등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候補者를 선출한 政黨의 中央黨과”로 하여 同條를 第6條의8로 하고, 第6條의7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의7(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 後援會 또는 後援會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는 定額領收證을 寄附金品과 交換하는 방법으로 募金을 할 수 있다.

第7條第2項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발행한 政治資金定額領收證(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을”을 “定額領收證을”로 하고, 同條第6項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를 “管轄選舉管理委員會”로 하며, 同條第7項중 “定額領收證은 그 額面金額과”를 “後援會는 領收證用紙의 기재금액 및 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과”로 한다.

第10條第3項중 “그 代表者와 會計責任者는 14日이내에 財産 및 收入·支出에 관한 明細書를 첨부하여”를 “그 代表者는 14日이내에 그 사실을”로 한다.

第15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7條第1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國會議員總選舉의 실시로 選舉權者 總數에 變경이 있는 때

에는 당해 選舉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補助金은 변경된 選舉權者 總數를 기준으로 計上하여야 한다.

第19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事務所設置・運營費

第19條第3項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 내지 第3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받은 政黨은 지급받은 補助金 總額의 100分の 20이상을 第1項第5號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第24條第1項 但書を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당해 選舉日 후 30日까지”를 “당해 選舉日 후 30日(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 후 40日)까지”로 한다.

다만, 政黨의 登錄이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와 後援會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때,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 候補者가 後援會指定을 撤回하거나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資格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日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28條의 題目 및 本文중 “寄附金品募集禁止法”을 각각 “寄附金品募集規制法”으로 한다.

第30條 本文중 “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者는”으로 하고, 同條第2號중 “第6條의6”을 “第6條의7”로 하며, 同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여 이를 同條第2項으로 한다.

7.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者가 아닌 者로서 政治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後援會나 이와 유사한 機構를 設置·운영한 者

第30條에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①이 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그 제공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은 沒收하며,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다만,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의 관계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7號중 “第19條第3項”을 “第19條第4項”으로 한다.

2. 第7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領收證用紙의 기재금액이나 定額 領收證의 額面金額과 상이한 금액을 納入·寄附한 者와 이를 받은 者

第32條第2號 내지 第4號를 각각 第3號 내지 第5號로 하고, 同條에 第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제작한 領收證用紙에 의한 領收證 또는 定額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한 者

##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新 · 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생 략)</p> <p>2. "政治資金"이라 함은 黨費, 後援金, 寄託金, 補助金, 後援 會의 募集金品과 政黨의 黨憲 · 黨規등에서 정한 附帶收入 등 政治活動을 위하여 所要되 는 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p> <p>3.~8.(생 략)</p>	<p>第3條(定義) ----- -----</p> <p>1.(現行과 같음)</p> <p>2. ----- ----- ----- -----附帶收 入 기타 政治活動을 위하여 제공되는 ----- -----</p> <p>3.~8.(現行과 같음)</p>
<p>第5條(後援會) ①~④(생 략)</p> <p>⑤中央黨後援會는 中央選舉管理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서울特別市·直轄市·道</u>에 각 1 個의 支部를 둘 수 있다.</p>	<p>第5條(後援會) ①~④(現行과 같음)</p> <p>⑤----- ----- ----<u>特別市·廣域市</u>----- -----.</p>
<p>第6條(後援會의 機能) ①後援會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 會員으로부터 後援金を 받 거나 會員이 아닌 者로부터 金 品을 募集하여 이를 당해 政黨 등에 寄附할 수 있다. 다만, 第6 條의4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p>	<p>第6條(後援會의 機能) ①----- ----- ----- ----- ----- ----- -----第6 條의4第2項 本文-----</p>





②後援會가 年間 徵收 또는 모  
집하는 政治資金은 第1項의 規  
定에 의한 年間 寄附限度額의  
1.5倍(前年度 移越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集會·郵便 또는 廣告에 의  
한 募金으로 부득이하게 年間  
寄附限度額의 1.5倍(前年度 移越  
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  
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④ (생략)

第6條의4(金品募集方法등) ①後援  
會의 金品募集은 集會에 의한 募  
金과 郵便에 의한 募金 및 廣告  
에 의한 募金の 方法으로 한다.

②後援會는 第1項의 각 募金方法  
으로 金品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公職選舉의 選舉期間중에는  
1회에 한하여 候補者를 추천  
한 政黨의 中央黨後援會, 管轄區

②-----  
-----  
-----  
-----  
-----  
-----  
-----  
-----  
-----  
-----  
-----  
-----

③~④(現行과 같음)

第6條의4(金品募集方法등) ①後援  
會는 集會에 의한 募金, 郵便·  
通信에 의한 募金, 廣告에 의한  
募金과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발  
행한 政治資金定額領收證(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과의 交  
換에 의한 募金の 方法으로 金品  
을 모집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職  
選舉의 選舉期間중에는-----  
-----  
-----  
-----



第6條의5(集會 또는 郵便에 의한

募金) ①(생략)

②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한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는 第1項의 集會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가자에게 염가의 飲料(酒類를 제외한다)와 茶菓·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金品을 제공할 수 없다. <但書 新設>

③集會 또는 郵便에 의한 募金의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방법으로 後援會名, 金品募集의 目的, 集會日時·場所 및 納入處·納入方法을 알릴 수 있다. 다만, 公職選舉의 選舉運動期間(大統領·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의 選舉運動期間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이 아닌 때에는 募金を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公職選舉의 選舉運動期間이 아닌 때에는 集會에 의한 募金의 방법으로 바자회·書畫展 기

第6條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 ①(現行과 같음)

②-----  
-----  
-----演藝活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祝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郵便·通信-----  
-----  
-----  
-----集會日時·場所, 納入處·納入方法과 募金を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但書 削除>

④-----  
-----  
-----



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방법(이하 “바자회·書  
畫展등”이라 한다)으로 金品을  
募集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자  
회·書畫展등은 金品을 모집하  
는 目的을 벗어나 金品을 제공  
하기 위한 目的으로 할 수 없으  
며, 바자회·書畫展등에서 販賣  
할 수 있는 金品등의 價額은  
100萬원이하로 한다.

⑤(생략)

第6條의6(廣告에 의한 募金) ①(생략)

③第1項의 廣告에는 後援會名,  
金品募集의 目的, 金品の 納入  
處와 納入方法, 募金目標額과  
募金を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  
여 알릴 수 있다. 다만, 公職選  
舉의 選舉運動期間중에는 그 廣  
告에 募金を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④(생략)

-----  
-----  
-----  
-----  
-----  
-----  
----- 할 수 없  
다.

⑤(現行과 같음)

第6條의6(廣告에 의한 募金) ①(現  
行과 같음)

③-----  
-----  
-----  
-----  
----- <但書 削除>

④(現行과 같음)

<新 設>

第6條의7(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 後援會 또는 後援會  
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는 定額  
領收證을 寄附金品과 交換하는  
방법으로 募金을 할 수 있다.

第6條의7(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의

第6條의8(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의

범위등) ①(생 략)

범위등) ①(現行과 같음)

②第6條의3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  
平年の 年間寄附限度額의 2倍를  
寄附할 수 있는 後援會는 다음  
과 같다.

②-----  
-----  
-----  
-----  
-----.

1. 大統領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1. -----

大統領候補者를 추천한 政黨  
의 市·道支部 및 地區黨後援  
會 또는 地域選舉區國會議員  
後援會

당해 政黨의 黨憲 등의 規定  
에 의하여 大統領候補者를 선  
출한 政黨의 中央黨과-----  
-----

2.(생 략)

2.(現行과 같음)



⑦定額領收證은 그 額面金額과 상이한 金額을 納入 또는 寄附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定額領收證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額面金額總額을 納入 또는 寄附받은 것으로 본다.

⑧(생략)

第10條(後援會의 解散등) ①·② (생략)

③後援會가 解散한 때에는 그 代表者와 會計責任者는 14日이내에 財産 및 收入·支出에 관한 明細書를 첨부하여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생략)

第15條(寄託金の 配分과 지급) ① (생략)

②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政治資金을 寄託하는 者가 國會議席을 가진 政黨 또는 配分比率을 정

⑦後援會는 領收證用紙의 기재금액 및 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과

-----  
-----  
-----  
-----  
-----  
-----  
-----

⑧(現行과 같음)

第10條(後援會의 解散등) ①·② (現行과 같음)

③-----그 代表者는 14日이내에 그 사실을  
-----  
-----  
-----.

④(現行과 같음)

第15條(寄託金の 配分과 지급) ① (現行과 같음)

<削 除>

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地區黨만을 指定하거나 指定한  
地區黨에 대한 配分比率이 寄託  
金總額의 100分の 50을 초과하  
는 때에는 寄託金總額의 100分  
의 50만을 당해 地區黨에 配分  
· 支給하고, 그 殘餘分은 당해  
政黨의 中央黨에 支給한다.

③(생략)

第17條(補助金の 計上) ①國家는  
政黨에 대한 補助金으로 최근  
실시한 國會議員總選舉의 選舉  
權者 總數에 800원을 곱한 금액  
을 매년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  
다.<後段 新設>

②~③(생략)

③(現行과 같음)

第17條(補助金の 計上) ①-----

-----  
-----  
-----  
-----  
--. 이 경우 國會議員總選舉의  
실시로 選舉權者 總數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選舉가 종료  
된 이후에 지급되는 補助金은  
변경된 選舉權者 總數를 기준으  
로 計上하여야 한다.

②~③(現行과 같음)

第19條(補助金の 用途制限等) ①

補助金は 政黨의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2. (생략)

3. 事務所維持費

4.~10. (생략)

<新設>

②(생략)

③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を 지급받은 政黨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이 支出되는지를 調査·확인할 수 있다.

第19條(補助金の 用途制限等) ①

-----  
-----  
-----  
-----.

1.~2.(現行과 같음)

3. 事務所設置·運營費

4.~10.(現行과 같음)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を 지급받은 政黨은 지급받은 補助金 總額의 100分の 20이상을 第1項第5號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現行 第2項과 같음)

④-----  
-----  
-----  
-----第1項 내지 第3項-----  
-----  
-----.

第24條(會計報告) ①政黨의 中央

黨, 市·道支部, 地區黨 및 後援會와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會計責任者는 매년 12月 31日 현재의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다음해 2月 15日 까지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의 登錄이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와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後援會指定을 撤回한 때 및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日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公職選舉에 참여한 政黨의 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의 會計責任者는 選舉期間중의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

第24條(會計報告) ①-----

-----  
-----  
-----  
-----  
-----  
-----  
-----  
-----  
-----  
-----

-----다만, 政黨의 登錄이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와 後援會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때,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後援會指定을 撤回하거나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資格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日이내에-----.

②-----  
-----  
-----  
-----  
-----

을 당해 選舉日후 30日까지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⑤(생략)

第28條(寄附金品募集禁止法の適用排除) 이 法에 의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寄附金品募集禁止法の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

第30條(罰則) <新設>

-- 당해 選舉日후 30日(大統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후 40日)까지---

③~⑤(現行과 같음)

第28條(寄附金品募集規制法の適用排除)-----  
-----  
寄附金品募集規制法-----  
-----.

第30條(罰則) ①이 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그 제공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은 沒收하며,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다만,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의 관계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 하 같다)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그 제공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은 沒收한다.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1.(생략)

2. 第6條의4 내지 第6條의6의 規定에 違反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와 第6條의5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바자회·書畫展 등을 金品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金品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者

3.~6. (생략)

<新設>

②-----者는

1.(現行과 같음)

2.-----第6條의7-

3.~6. (現行과 같음)

7.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者가 아닌 者로서 政治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後援會나 이와 유사한 機構를 設置·운영한 者

第31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1.(생략)

2.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

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제  
작한 領收證用紙를 사용하여  
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하거  
나 同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  
하여 定額領收證을 그 額面金  
額과 상이한 金額을 納入·寄  
附받고 사용한 者

3.~6.(생략)

7. 第19條第3項·第24條의2第3項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選  
舉管理委員會의 調査 또는 資  
料確認이나 제출요구에 正當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者

8.(생략)

第31條(同前) -----

-----  
-----  
-----

1.(現行과 같음)

2. 第7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

여 領收證用紙의 기재금액이나  
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과 상이  
한 金額을 納入·寄附한 者와  
이를 받은 者

3.~6.(現行과 같음)

7. 第19條第4項-----

-----  
-----  
-----  
-----

8.(現行과 같음)

第32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  
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  
다.

1.(생략)

<新設>

2.~4.(생략)

第32條(同前) -----

-----

-----

-----

1.(現行과 같음)

2.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

에 위반하여 中央選舉管理委

員會가 제작한 領收證用紙에

의한 領收證 또는 定額領收證

을 교부하지 아니한 者

3.~5.(現行 第2號 내지 第4號와

같음)